거창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9~123

제출일자 : 2019. 11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(2019.12.31.) 및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: 거창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

나. 위　　치 :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

다. 사업내용

○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·상담·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

○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

○ 아이돌봄서비스 , 가족관계 개선, 부모역할 지원 등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

○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5. 12. 31.(5년)

마. 위탁방법 :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

바. 수탁자격

○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
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
○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

○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

○ 거창군 건강가정·다문화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·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 함으로써,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함

나. 관계법령

○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

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
○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「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」 제22조

다. 추진일정

○ 군의회 동의 : 2019. 11월

○ 모집공고 및 접수 : 2019. 11. 15. ~ 11. 29.

○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: 2019. 12월 중

○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: 12월 중

라. 소요예산 : 292백만원(국비146 도비43 군비103)

마. 위탁운영 계획 : 따로 붙임

- 거창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-

위 탁 운 영 추 진 계 획

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(2019.12.31.)예정에 따라「건강가정기본법」및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근거하여 가족의 유형별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**거창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**로 **통합하여 위탁 운영**하고자 함.

Ⅰ 관련근거

○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

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및

○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2019년 가족사업안내 / 여성가족부 지침

Ⅱ 추진배경

○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만료 : 2019. 12. 31.

○ 여성가족부 권고 : '20년까지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

-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포괄적으로 제공

※ 2020년 도내 18개 시·군 모두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추진

Ⅲ 추진방향

○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

○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통합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능력 고려

○ 공정한 심사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·결정

Ⅳ 위탁개요

□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시설규모	비 고
거창군 건강가정 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	거창읍 강남로 1길 170 1층 (구 보건소)	214.61㎡	

□ 현 위탁체 현황

수탁기관	대 표	시설장	주 소	비고
거창기독교청년회 (거창YMCA)	허 운	조미금	거창읍 강변로 87	

※ 최초 운영 : 2008. 1. 31. / 거창기독청년회(거창YMCA) 위탁

○ 위탁기간 : 2018. 1. 1. ~ 2019. 12. 31.(2년)

○ 2019년 예산 : 531,031천원

○ 위탁사무 :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반 운영

□ 위탁사유 : 위탁기간 만료

□ 위탁기간 : 2020. 1. 1.~ 2025. 12. 31.(5년)

□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□ 위탁사무 : 건강가정 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
□ 위탁 추진절차

① 단계	⇒	② 단계	⇒	③ 단계	⇒	④ 단계	⇒	⑤ 단계
군의회 동의		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		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		수탁기관 선정 및 통보		사업 운영

Ⅴ 세부추진계획

□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
○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: 2019. 11월 임시회

□ 모집공고 및 접수

○ 공고기간 : 2019. 11. 15. ~ 11. 29.(15일간)

○ 접수기간 : 2019. 11. 20. ~ 11. 29.(10일간)

○ 공고방법 : 군 홈페이지 등

○ 공고내용 : 대상시설, 위탁기간, 신청자격, 구비서류, 선정방법 등

○ 신청자격

-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
- 「비영리법인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

○ 신청제외자

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
-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거나 민·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
-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 등

○ 위탁사무 : 건강가정・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
사업영역	기본기본사업	비 고
가족관계	부모역할 지원(임신·출산부모지원, 영유아기 부모 지원, 학부모지원, 혼례가치교육, 아버지역할지원) 부부역할지원(부부갈등예방·해결지원, 노년기 부부지원), 이혼전·후 가족지원, 다문화가족관계 향상지원,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 조성,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, 가족상담	교육, 상담(정보제공 및 초기상담), 문화프로그램 등
가족돌봄	가족의역량강화지원,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	교육,상담(정보제공+초기상담→전문상담)돌보미 파견, 사례관리 등
가족생활	맞벌이가정, 일·가정의 양립지원,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,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, 결혼이민자 취업지원	교육, 상담, 정보제공, 문화프로그램 등
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	가족봉사단(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), 다문화가족 교류·소통 공간 운영, 가족 사랑의 날,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. 인식 개선 및 공동체 의식, 가족친화문화프그램	모임, 활동, 문화프로그램 등
별도사업	아이돌봄지원사업,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, 한국어교육사업,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,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	

※ 2019년 건강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영역별 사업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

○ 구성인원 : 7명이내(위원장 포함)

○ 위원구성 : 관련공무원,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○ 위 원 장 : 위원 중에서 지명

○ 심의결정 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□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

○ 일　　시 : 2019. 12월 중

○ 장　　소 : 군청 중회의실

○ 심의위원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

○ 심의방법 : 서류심사, 사업계획 설명(PPT), 질의응답

○ 심사기준

항목(5개부분)	점수(100점)	심사내용(16개항목)
1. 법인 적격성	10	- 유형 및 설립목적 - 적격성
2. 재정능력 및 공신력	20	- 보유자산(부동산, 동산 구분) - 지역사회내 공신력 제고방안 -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
3. 사업운영·실적능력	30	- 기관대표의 이사회의 적합성 - 운영실적, 전문성 -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
4. 운영계획의 적정성	30	-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- 사업운영의 전문성. 재정확충방안의 타당성 - 지역사회 자원원방안
5. 센터장 전문성	10	- 센터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

○ 선정방법

-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
-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,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
- 심사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

□ 위탁계약 체결 : 2019. 12월중

○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5. 12. 31.(5년)

○ 계약방법 :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계약 체결

○ 계약조건 :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유지

Ⅵ 행정사항

○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: 2019. 10월

○ 모집공고 및 접수 : 2019. 11월

○ 선정심사위원회 개최(별도계획 수립) : 2019. 12월

[관계법령]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(이하 "건강가정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6.> 1.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2.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.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.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.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.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·번역 지원사업 7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·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

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2.> ⑦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 기준, 위탁 · 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2. 2. 1.]

□ 건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・검사・검정・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・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・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